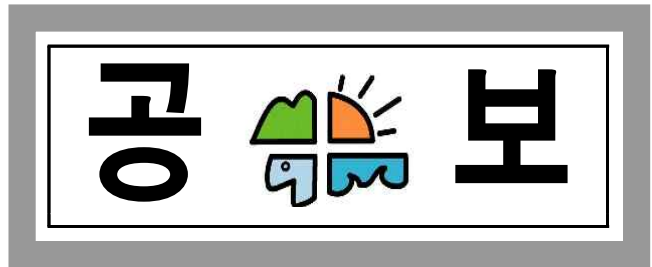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1328호 2021년 6월 4일(금)

고 시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2
- 속초 도시관리계획(동명5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고시 .. 8

공 고

-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13
-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14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16
- 속초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17

입법예고

- 속초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1
- 속초시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 및 시민참여단 운영 규칙안 입법예고 ... 25

●속초시 고시 제2021-63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주택법」 제1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06월 01일

속 초 시 장

- 1. 사업명칭 : 속초시 동명동 450-86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 2.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 및 대표자 : (주)아람주택 대표 서인철
 -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37, 8층
- 3. 사업위치 : 강원도 속초시 동명동 450-86번지 외 86필지
- 4. 사업개요

사업종류	사업내용	사업비	비고
분양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면적 : 8,387㎡ ○ 건축면적 : 3,072.56㎡ ○ 연 면 적 : 98,167.57㎡ ○ 주 용 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층 수 : 지하4층 / 지상 43층 ○ 세 대 수 : 546세대 	265,371,171천원	

- 5. 사업시행기간 : 2021.07.01. ~ 2024.07.01.(예정)
-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 「건축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의 결정
 -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붙임 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 7. 관계서류는 속초시청 건축과(☎033-639-2773)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하게 합니다.

<붙임 1>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1.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47	동명5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속초시 동명동 450-86번지 일원	-	증)9,632	9,632	-

1.1.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면 적(㎡)	결 정 사 유
신설	47	속초시 동명동 450-86번지 일원	9,632	◦ 속초시 동명동 일원에 체계적인 공동주택 및 근린 생활시설 등 건축물 신축을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 으로 지정

2.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2.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2.1.1. 용도지역 지형도면 승인 조서(변경 없음)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9,632	-	9,632	100.0	-
제2종일반주거지역	2,459	-	2,459	25.5	-
일반상업지역	7,173	-	7,173	74.5	-

2.2.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2.2.1. 용도지구 지형도면 승인 조서(변경 없음)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면적(㎡)	연장(m)	폭원(m)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1	중심시가지 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중앙동 471-4대	487,709 (9,632)	-	300~400	2007.11.2. (강고 제2007-236호)	-

※ ()는 구역내 면적임

3.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3.1. 도로

3.1.1. 도로총괄표

구분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면적(m ²)	노선수	연장(m)	면적(m ²)	노선수	연장(m)	면적(m ²)	노선수	연장(m)	면적(m ²)
계	5	8,626 (281)	183,542 (1,205)	2	3,015 (96)	45,372 (865)	-	-	-	3	5,611 (185)	138,170 (340)
대로	2	5,500 (185)	137,500 (340)	-	-	-	-	-	-	2	5,500 (185)	137,500 (340)
중로	1	2,941 (22)	44,560 (53)	1	2,941 (22)	44,560 (53)	-	-	-	-	-	-
소로	2	185 (74)	1,482 (812)	1	74 (74)	812 (812)	-	-	-	1	111	670

※ ()는 구역내 연장 및 면적임

3.1.2.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중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2	25 ~29.5	주간선 도로	340	동명 450-1도	동명 259-3도	일반 도로		1974. 8. 14. (건고 제272호)	-
변경	대로	3	2	25 ~32.0	주간선 도로	340 (87)	동명 450-1도	동명 259-3도	일반 도로		1974. 8. 14. (건고 제272호)	-
기정	대로	3	4	25 ~29.5	주간선 도로	5,160	교동 911도	장사동 474-3도	일반 도로		1976. 3. 27. (건고 제37호)	-
변경	대로	3	4	25 ~29.5	주간선 도로	5,160 (98)	교동 911도	장사동 474-3도	일반 도로		1976. 3. 27. (건고 제37호)	-
기정	중로	1	3	20~22	보조 간선 도로	2,941	광3-1 교동671-2 도	대3-4 131-5도	영랑 일반 도로	속초 시청	1969. 3. 25. (강고제69-2119호)	-
변경	중로	1	3	20~24	보조 간선 도로	2,941 (22)	광3-1 교동671-2 도	대3-4 131-5도	영랑 일반 도로	속초 시청	1969. 3. 25. (강고제69-2119호)	-
신설	소로	1	3	10 ~12.6	국지	74 (74)	동명동452-3대 소로3-25	동명동450-1도 대로3-4	일반 도로		-	-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접	중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폐지	소로	3	24	6	국지	46	동명450-1도 대로3-4	동명450-100대 소로3-26	일반 도로		1977. 4. 19. (강고제77-72호)	-
기정	소로	3	26	6	국지	213	동명455-1대 중로2-33	동명450-1도 소로3-24	일반 도로		1977. 4. 19. (강고제77-72호)	
변경	소로	3	26	6	국지	111	동명455-1대 중로2-33	동명450-1도 소로3-24	일반 도로		1977. 4. 19. (강고제77-72호)	

※ ()는 구역내 면적임

※ 구역 외 도로(소로3-26호선)은 당해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개설하여 기부채납 예정임

3.1.3.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 전 도로명	변경 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3-2	대로3-2	◦ 폭원 확장 - 폭원 : 25~29.5m ⇒ 25~32.0m	◦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도로 일부 확폭
대로3-4	대로3-4	◦ 일부구간 폭원 확장 - 폭원 : 25m ⇒ 25~26.8m	◦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도로 일부 확폭
중로1-3	중로1-3	◦ 폭원 확장 - 폭원 : 20~22m ⇒ 20~24m	◦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도로 일부 확폭
-	소로1-3	◦ 도로 신설 - 연장 : 74m, 폭원 : 10~12.6m	◦ 지구내 진출입로 개설을 위한 도로 신설
소로3-24	-	◦ 도로 폐지	◦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대체도로 신설로 인한 도로 폐지
소로3-26	소로3-26	◦ 도로연장 축소 - 연장 : 213m ⇒ 111m	◦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대체도로 신설로 인한 도로연장 축소

3.2. 광장

3.2.1. 광장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m ²)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40	광장	교통광장	동명동 81-1도 일원	3,248	1986. 6. 3. (건고 제238호)	-
변경	7	광장	교통광장	동명동 81-1도 일원	3,273	1986. 6. 3. (건고 제238호)	-

3.2.2. 광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40 → 7	교통광장	◦ 면적변경: 3,248m ² ⇒ 3,273m ² ◦ 도면번호변경: 40 ⇒ 7	◦ 우회전 차로 도류화로 인한 면적변경 등

4.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부문

4.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4.1.1.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 조서

가구 번호	면 적(m ²)	획 지			비고
		획지번호	위 치	면 적(m ²)	
합 계	8,387	-		8,387	
A	8,387	A-1	◦ 속초시 동명동 450-86번지 일원	8,387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4.2.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4.2.1.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도 면 번호	위치	구분	결정내용	
A-1	동명동 450-86번지 일원	허용용도	◦ 1층 이하 - 일반상업지역 내 허용용도	
			◦ 1층 초과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제외)	
		불허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 운수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 도시계획조례 제33조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제한하는 용도	
		건폐율	제2종일반 주거지역	◦ 60% 이하
			상업지역	◦ 80% 이하
		용적률	제2종일반 주거지역	◦ 250% 이하
			상업지역	◦ 900% 이하
		높 이		◦ 43층 이하
		배 치		◦ 가로경관 향상, 보행공간 확보 및 대지와와의 조화로운 연계를 위한 체계적이고 안정감 있는 건축물 배치 유도 ◦ 대기의 원활한 이동을 위한 건축물 배치, 층수, 간격 등의 적절한 배치 유도
		형 태		◦ 경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모든 건축물의 옥탑층, 주현관, 지붕의 형태가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
		색 채		◦ 주변과의 조화를 고려하고 도시경관에 적합한 색채로 유도 ◦ 대비가 강한 색채는 억제하고 중명도, 중채도의 색으로 자연색과 어울리는 색채 권장
건축선		◦ 건축한계선 6.0m : 도로변 (도면표시)		

5. 기타사항에 관한 부문

5.1.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A	동 명 동 450-86번지 일원	단지내 조정	◦ 「건축법」 및 「속초시 건축조례」 등 관련법령에 의한 설치기준 이상 조성	
		차량진출입 허용구간	◦ 결정도에 차량출입허용구간으로 표현된 부분에 한하여 차량출입을 허용 ◦ 교통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구간을 지정하여 차량 진출입구 설치	
		주차장 설치기준	◦ 「주차장법」 및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설치기준 이상의 주차장 확보	

속초시 고시 제2021-64호

속초 도시관리계획(동명5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고시

1. 속초시 고시 제2021-63호(2021.06.01.)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된 속초 도시관리계획(동명5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속초시청 건설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6월 4일

속 초 시 장

1.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 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47	동명5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속초시 동명동 450-86번지 일원	-	증)9,632	9,632	-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 사유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면 적(㎡)	결 정 사 유
신설	47	속초시 동명동 450-86번지 일원	9,632	◦ 속초시 동명동 일원에 체계적인 공동주택 및 근린 생활시설 등 건축물 신축을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나.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 조서

1) 용도지역 지형도면 승인 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9,632	-	9,632	100.0	-
제2종일반주거지역	2,459	-	2,459	25.5	-
일반상업지역	7,173	-	7,173	74.5	-

2) 용도지구 지형도면 승인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m ²)	연장(m)	폭원(m)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1	중심시가지 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중앙동 471-4대	487,709 (9,632)	-	300~400	2007.11.2. (강고 제2007-236호)	-

※ ()는 구역내 면적임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 조서

가) 교통시설

▣ 도로총괄표

구분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면적(m ²)	노선수	연장(m)	면적(m ²)	노선수	연장(m)	면적(m ²)	노선수	연장(m)	면적(m ²)
계	5	8,626 (281)	183,542 (1,205)	2	3,015 (96)	45,372 (865)	-	-	-	3	5,611 (185)	138,170 (340)
대로	2	5,500 (185)	137,500 (340)	-	-	-	-	-	-	2	5,500 (185)	137,500 (340)
중로	1	2,941 (22)	44,560 (53)	1	2,941 (22)	44,560 (53)	-	-	-	-	-	-
소로	2	185 (74)	1,482 (812)	1	74 (74)	812 (812)	-	-	-	1	111	670

※ ()는 구역내 연장 및 면적임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3	2	25~29.5	주간선 도로	340	동명 450-1도	동명 259-3도	일반 도로		74.8.14. (건고 제272호)	-
변경	대로	3	2	25~32.0	주간선 도로	340 (87)	동명 450-1도	동명 259-3도	일반 도로		74.8.14. (건고 제272호)	-
기정	대로	3	4	25	주간선 도로	5,160	교동 911도	장사동 474-3도	일반 도로		95.10.6.	-
변경	대로	3	4	25~26.8	주간선 도로	5,160 (98)	교동 911도	장사동 474-3도	일반 도로		95.10.6.	-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3	20~22	보조 간선 도로	2,941	광3-1 교동671-2 도	대3-4 영랑131-5 도	일반 도로	속초 시청	1969.3.25. (강고제69-2119호)	-
변경	중로	1	3	20~24	보조 간선 도로	2,941 (22)	광3-1 교동671-2 도	대3-4 영랑131-5 도	일반 도로	속초 시청	1969.3.25. (강고제69-2119호)	-
신설	소로	1	3	10 ~12.6	국지	74 (74)	동명동452-3대 소로3-25	동명동450-1도 대로3-4	일반 도로		-	-
폐지	소로	3	24	6	국지	46	동명450-1도 대로3-4	동명450-100대 소로3-26	일반 도로		1977.4.19. (강고제77-72호)	-
기정	소로	3	26	6	국지	213	동명455-1대 중 로2-33	동명450-1도 소 로3-24	일반도 로		1977.4.19. (강고제77-72호)	-
변경	소로	3	26	6	국지	111	동명455-1대 중 로2-33	동명450-1도 소 로3-24	일반도 로		1977.4.19. (강고제77-72호)	-

※ ()는 구역내 면적임

※ 구역 외 도로(소로3-26호선)은 당해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개설하여 기부채납 예정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 전 도로명	변경 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3-2	대로3-2	◦ 폭원 확장 - 폭원 : 25~29.5m ⇒ 25~32.0m	◦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도로 일부 확폭
대로3-4	대로3-4	◦ 폭원 확장 - 폭원 : 25m ⇒ 25~26.8m	◦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도로 일부 확폭
중로1-3	중로1-3	◦ 폭원 확장 - 폭원 : 20~22m ⇒ 20~24m	◦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도로 일부 확폭
-	소로1-3	◦ 도로 신설 - 연장 : 74m, 폭원 : 10~12.6m	◦ 지구내 진출입로 개설을 위한 도로 신설
소로3-24	-	◦ 도로 폐지	◦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대체도로 신설로 인한 도로 폐지
소로3-26	소로3-26	◦ 도로연장 축소 - 연장 : 213m ⇒ 111m	◦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대체도로 신설로 인한 도로연장 축소

나) 공간시설

▣ 광장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m ²)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7	광장	교통광장	동명동 81-1도 일원	3,248	증)25	3,273	1986.6.3 (건고 제238호)	-

■ 광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7	교통광장	◦ 면적변경 - 3,248㎡ ⇒ 3,273㎡	◦ 우회전 차로 도류화로 인한 면적변경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 조서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획지번호	위치	면적(㎡)	
합계	8,387	-		8,387	
A	8,387	A-1	◦ 속초시 동명동 450-86번지 일원	8,387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5)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 조서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결정내용	
A-1	동명동 450-86번지 일원	허용용도	◦ 1층 이하 - 일반상업지역 내 허용용도	
			◦ 1층 초과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제외)	
		불허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 운수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 도시계획조례 제33조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제한하는 용도	
		건폐율	제2종일반 주거지역	◦ 60% 이하
			상업지역	◦ 80% 이하
		용적률	제2종일반 주거지역	◦ 250% 이하
			상업지역	◦ 900% 이하
		높이		◦ 43층 이하
		배치		◦ 가로경관 향상, 보행공간 확보 및 대지와와의 조화로운 연계를 위한 체계적 이고 안정감 있는 건축물 배치 유도 ◦ 대기의 원활한 이동을 위한 건축물 배치, 층수, 간격 등의 적절한 배치 유도
형태		◦ 경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모든 건축물의 옥탑층, 주현관, 지붕의 형태가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		
색채		◦ 주변과의 조화를 고려하고 도시경관에 적합한 색채로 유도 ◦ 대비가 강한 색채는 억제하고 중명도, 중채도의 색으로 자연색과 어울리는 색채 권장		
건축선		◦ 건축한계선 6.0m : 도로변 (도면표시)		

6)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 조서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A	동 명 동 450-86번지 일원	단지내 조정	◦ 「건축법」 및 「속초시 건축조례」 등 관련법령에 의한 설치기준 이상 조성	
		차량진출입 허용구간	◦ 결정도에 차량출입허용구간으로 표현된 부분에 한하여 차량출입을 허용 ◦ 교통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구간을 지정하여 차량진출입구 설치	
		주차장 설치기준	◦ 「주차장법」 및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설치기준 이상의 주차장 확보	

2.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도면 : 실음생략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인 공동주택 세대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의거 소유자(점유자)에게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행정절차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 5. 28.

속 초 시 장

1. 공고내용 :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1. 5. 28. ~ 2021. 6. 11.(14일간)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4. 공시송달대상

연번	위반대상(위치)	위반내용	처분내용	송달불능 사유
1	강원도 속초시 관광로 344, 테르바움 114동 402호	불법증축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자진철거)	폐문부재
2	강원도 속초시 관광로 344, 테르바움 115동 101호	불법증축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자진철거)	폐문부재
3	강원도 속초시 관광로 344, 테르바움 115동 401호	불법증축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자진철거)	폐문부재

5. 공시송달내용

- 귀하께서 소유(점유)하고 있는 우리 시 건축물 위반사항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시정명령 하오니 2021년 5월 31까지 시정(자진철거)하시기 바라며, 시정완료 후에는 그 결과를 우리시 건축과 주택팀(☎033-639-2773)으로 즉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한 내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1조(벌칙)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되며, 같은 법 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위법행위가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매년 반복부과됨을 알려드리오니 본 건과 관련하여 불이익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공 시 송 달 공 고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한 공동주택 세대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94조 규정에 의거 입주자등에게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행정절차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 5. 28.

속 초 시 장

1. 공고내용 :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1. 5. 28. ~ 2021. 6. 11.(14일간)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4. 공시송달대상

연번	위반대상(위치)	위반내용	처분내용	송달불능 사유
1	강원도 속초시 관광로 344, 테르바움 102동 101호	공용부분 내 시설물설치	공동주택관리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자진철거)	폐문부재
2	강원도 속초시 관광로 344, 테르바움 102동 103호	공용부분 내 시설물설치	공동주택관리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자진철거)	폐문부재
3	강원도 속초시 관광로 344, 테르바움 106동 102호	공용부분 내 시설물설치	공동주택관리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자진철거)	폐문부재
4	강원도 속초시 관광로 344, 테르바움 109동 101호	공용부분 내 시설물설치	공동주택관리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자진철거)	폐문부재
5	강원도 속초시 관광로 344, 테르바움 112동 102호	공용부분 내 시설물설치	공동주택관리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자진철거)	폐문부재
6	강원도 속초시 관광로 344, 테르바움 115동 101호	공용부분 내 시설물설치	공동주택관리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자진철거)	폐문부재

7	강원도 속초시 관광로 344, 테르바움 115동 103호	공용부분 내 시설물설치	공동주택관리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자진철거)	폐문부재
---	------------------------------------	-----------------	--------------------------------	------

5. 공시송달내용

- 귀하께서 소유(점유)하고 있는 우리 시 건축물(공동주택) 위반사항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94조(공사의 중지 등)에 따라 시정명령 하오니, 2021년 5월 31까지 시정(자진철거)하시기 바라며, 시정완료 후에는 그 결과를 우리시 건축과 주택팀(☎033-639-2773)으로 즉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한 내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99조(벌칙) 규정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됨을 알려드리오니 본 건과 관련하여 불이익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에 따라 철거·멸실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 건축물대장상 소유자에게 말소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나, 소유자의주소불명 등으로 말소처리를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 6. 3.

속 초 시 장

1. 공고기간 : 2021. 6. 3. ~ 2021. 6. 17. (14일간)
2. 공고장소 : 속초시 홈페이지, 게시판,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시송달 내용

처분의 제목	당사자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성 명	주 소		위 치	건축물현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말소일:2021.5.28..)	박○순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건축물 미존재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466	지상 1층 목조 주택 61.15㎡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말소일:2021.5.28..)	이○우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1371-11 6/1	건축물 미존재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1371-11	지상 1층 목조 주택 53.05㎡

4. 유의 사항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속초시 건축과(☎033-639-15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 및 「속초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함에 있어 주민 여러분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6월 일

속 초 시 장

1. 낚시금지구역 지정 이유

- 내방객 불편해소 및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2. 낚시금지구역 현황

명 칭	위 치	면 적	비 고
속초해수욕장 헤드랜드	속초해수욕장 헤드랜드 일원 (조양동 1450-101 및 인근 공유수면)	3,031.07㎡	인접 구조물 및 해수면 포함

3. 관련근거

- 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낚시통제구역)
- 나. 「속초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
-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4. 주요내용

가. 통제기간 : 지정 고시일부터 해제 전까지 연중 24시간

나. 금지행위 : 통제구역 내 낚시행위 일체 금지

다. 위반자에 대한 처분

1) 근 거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5조 제1항 제1호

2) 과 태 료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차 20만원/2차 40만원/3차 80만원)

5. 행정예고기간 : 2021. 6. 1. ~ 2021. 6. 21.(21일간)

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속초시 해양수산과(연안관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1. 6. 1. ~ 2021. 6. 21.(21일간)

나. 제 출 처 : 속초시 해양수산과

다. 제출내용 : **【붙임2】** 서식 참고

1) 의견제출자 인적사항[주소,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연락처]

2) 행정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

라.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 팩스 중 택일(우편의 경우 기한 내 도달 기준)

1) 주소 : (우)24826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해양수산과

2) 팩스 : 033)639-2338

마.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해양수산과(033-639-24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위치도 1부.

2. 의견제출서 1부.

【 붙임1 】 위치도

○ 위치 : 속초해수욕장 헤드랜드 일원

<면적 : 3,031.07m² >



【 붙임2 】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제목 :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속 초 시 장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속초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속초시 사무위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6월 2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위임사무 명시 및 기타 위임사무 근거법령을 현행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 신설(안 별표)
- 나. 위임사무 근거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용어 변경(안 별표)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나. 의견제출 및 문의처

- 1) 주소 : (우24826)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자치행정과
- 2) 전화 : 033-639-2140
- 3) 팩스 : 033-639-2590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6.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 자치행정과 조직인사팀(033-639-21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행한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제6조의3 규정에 따라 인용처리된 것으로 본다.

[별표]

위 임 사 무 명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1	◦ 당해 동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의 징수결정 및 취소, 경정 등	「지방회계법」 제20조 및 제21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4조, 제32조 및 제33조
2	◦ 물품의 불용결정(취득단가 5백만원 미만의 물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7조
3	◦ 자동차 변경등록(주소변경의 경우에 한함) 신청접수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 등록령」 제22조 「자동차 등록규칙」 제29조
4	◦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사무 -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제6조의3

속초시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 및 시민참여단 운영 규칙안 입법예고

「속초시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 및 시민참여단 운영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6월 3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속초시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 및 시민참여단 운영 규칙안」

2. 제정이유

속초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조성협의체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 마련 및 시민참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행규칙을 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제정 목적 (안 제1조)
- 나. 위원장의 임무 (안 제2조)
- 다.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안 제3, 4조)
- 라. 회의 운영 (안 제5조)
- 마. 시민참여단 활동 지원 (안 제8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 6. 23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 (참조 : 가족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의견과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개정(안)	수정(안)	수정이유

나. 의견제출 장소 및 문의처

- 주 소 : 우)24826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가족지원과
(중앙동)
- 연락처 : 전화(033-639-2441), 팩스(033-639-2739)

다.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6.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가족지원과 여성정책팀(☎033-639-244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 및 시민참여단 운영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속초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속초시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 및 속초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장의 임무) ① 속초시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속초시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이하 “협의체”로 한다)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조(임기)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위원의 건강 등 개인사정의 이유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3.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합 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회의) ① 협의체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에 회의의 일시·장소 및 토의안건 등을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시장은 협의체에서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하는데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간사) ①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친화도시 관련 업무 담당으로 한다.

② 간사는 협의체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관리한다.

제7조(회의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시민참여단 활동의 지원 등) 시장은 속초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이하 참여단”이라 한다)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참여단 활동에 필요한 자료 제공
2. 각종 워크숍 및 간담회 참석 경비
3. 참여단의 모니터링 활동비
4. 참여단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 및 연수 경비
5. 참여단의 업무능력 향상과 사기진작에 필요한 경비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